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583524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재판경과

대법원 2016. 8. 17 선고 2016다218768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나204655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9 선고 2014가합583524 판결

전문

원고기술신용보증기금

피고1. A

2. B

3. C

변론 종결 2015. 6. 22.

판결 선고 2015. 7. 9.

주문

1.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192,859원을 지급하라.
2. 경상북도 의성군 D 임야 28,959m²에 관하여,
 -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2014. 8. 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한다.
 - 나. 피고 C은 피고 B에게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4. 9. 18. 접수 제1322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의 피고 A, B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A, B 사이에 생긴 부분의 1/2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A, B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C이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주문 제2항과 같다. 피고 A,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77,182,662원 및 그중 365,680,109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최후 송달일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주식회사 E의 신용보증약정

- 1) 원고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중소기업의 자금 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 법인이다.
- 2)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차례에 걸쳐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해주었다.

2005. 4. 12.	8,500만 원(2006. 4. 11.) 이후 보증원금은 8,000만 원으로, 보증기한은 2015. 4. 3.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중소기업은행	중소기업자금 대출 1억 원
2009. 2. 9.	2억 8,500만 원(2010. 2. 9.) 이후 보증원금은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2. 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3억 원
2013. 2. 7.	2억 2,500만 원(2014. 2. 7.) 이후 보증원금은 2억 250만 원, 보증기한은 2015. 2. 6.로 변경됨(이하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	우리은행	기업운전일반 자금대출 3억 원

3)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서 E는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 ① 대위변제금액 및 지급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의 손해금율(2012. 12. 1. 이후 연 12%임)에 의한 지연손해금, ②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원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다음날부터 보증소멸일 전까지 보증료율에 1000분의 5를 가산한 요율에 의한 추가보증료, ③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함으로써 그 권리를 실행 또는 보전하기 위하여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체당금) 등 모든 부대채무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하였다.

나. 피고 A, B의 연대보증

피고 A,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다. 보증사고 발생 및 원고의 대위 변제

1) E는 자금 사정이 악화되어 2014. 7. 10.부터 이자를 연체하다가 2014. 8. 2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58호로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4. 10. 1. E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원고는 2014. 10. 1. 중소기업은행에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80,660,405원을 대위변제하고, 2014. 10. 17. 우리은행에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58,700,923원, 이 사건 제3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206,575,409원을 각 대위변제하였다.

라. E에 대한 회생계획 인가 및 원고의 변제 총당

1) E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58호 사건에서 2015. 4. 14. 회생계획안이 인가되었다. 그로 인해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원금 및 개시 전 이자의 36.36%는 출자 전환되고, 63.64%는 현금 변제하되, 6년간 매년 균등 분할하여 변제하고, 개시 후 이자(개시 후 이자는 회생절차 개시결정일인 2014. 10. 1.부터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원금변제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미변제 시인된 채권액에 대하여 발생하는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말한다)는 면제되는 것으로 회생계획안이 확정되었다.

2) 위 회생계획안에 따라 원고의 채권액 중 177,586,288원이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 전환되었고, 그 효력은 회생계획안 인가일 다음날인 2015. 4. 15. 발생하였다.

3) 원고는 위와 같이 변제를 갈음하여 출자 전환된 177,586,288원으로 ① 이 사건 제1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 77,990,065원에 변제총당하고, ② 나머지

99,596,223원(177,586,288원 - 77,990,065원)을 이 사건 제2차 신용보증약정에 의한 구상금 채권에 변제충당하였다.

4)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한 원고의 E에 대한 구상금 채권의 회수금 및 잔존 대위변제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1	2014. 10. 1.	564,600원	0
2014. 10. 17.	2,105,740원		
2015. 4. 15.	77,990,065원		
2	2015. 4. 15.	99,596,233원	159,104,700원
3	-	0	206,575,409원
합계	180,256,638원	365,680,109원	

마. 피고 B와 피고 C의 부동산 매매

피고 B는 2014. 9. 18. 경상북도 의성군 D 임야 29,859m²(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 C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가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A, F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E의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따라서 피고 A,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대위변제금 365,680,109원(총 대위변제금 545,936,737원 - 회수금 합계 180,256,638원) 및 구상금 채권의 보전을 위해 지출한 법적 절차비용 512,750원, 회수일까지 발생한 확정지연손해금 10,989,803원, 합계 377,182,622원 및 그중 365,680,109원에 대하여는 2014. 10.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50조제 2항, 제567조,

제625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 및 파산선고 이후 면책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2) 주채무자인 E에 대해 인가된 회생계획안에서 개시 후 이자, 즉 2014. 10. 1.부터 발생한 이자 및 지연손해금이 면제되었음은 위 1.라.항 기재와 같으므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 따라 피고 A, F에 대한 개시 후 이자도 면제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원고가 피고 A, F에게 청구하고 있는 확정지연손해금 및 2014. 10. 17.부터 계산한 지연손해금은 모두 개시 후 이자에 해당하는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따라서 피고 A, F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366,192,859원(잔존 대위변제금 365,680,109원 + 법적 절차비용 512,750원)을 변제할 의무가 있다.

다. 피고 A,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의 입법취지는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이고 주채무자가 중소기업인 경우 연대채무에 대하여 부종성의 원칙을 적용하여 실패한 중소 기업인이 재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E에 대한 회생계획안에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무의 변제기가 연장되었으므로, 피고 A, F의 연대보증채무도 변제기가 동일하게 연장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A, F의 연대보증채무는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2) 판단 가) 채무자의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50조 제2항에 의하면, 회생채권자는 회생계획과 관계없이 보증인에 대하여는 언제든지 본래의 채권을 청구하고 집행을 할 수 있으므로 회생계획에 의하여 회생채권의 수액이나 변제기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대하여는 아무런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7다11231 판결 등 참조).

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서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는 시점에 주채무가 감경 또는 면제될 경우 연대보증채무도 동일한 비율로 감경 또는 면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채무의 변제기를 유예해 주는 행위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7조의 3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채무의 감경 또는 면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다) 피고 A, F의 연대보증채무는 채무자회생법 제250조 제2항에 따라 E에 대한 회생계획의 영향을 받지 않아 변제기가 유예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 A, F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한 것을 요하지만, 그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1870 판결 등 참조).

2) 판단 가) 피고 B와 피고 C이 2014. 8. 5.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이미 원고의 구상금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존재하였다. E의 자금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가까운 장래에 보증사고가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지 5일 후인 2014. 8. 10. 주식회사 E가 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함으로써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 제6조 제1호에 의해 사전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고, 원고가 2014. 10. 1. 중소기업은행에 80,660,405원, 2014. 10. 17. 우리은행에 465,276,332원을 대위변제함으로써 사후구상금 채권도 발생하였다.

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구상금 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나. 사해행위 해당 여부

1) 관련 법리 가) 채무자의 무자력 요건은 사해행위 결과 비로소 채무초과 상태에 빠지게 되면 충분하고, 사해행위로 수익자에게 귀속된 재산은 채무자의 적극재산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다58963 판결 등 참조).

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고,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된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2) 판단 피고 B는 주식회사 E의 사내이사로서, E의 자금사정을 잘 알고 있었는데도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유일한 부동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 C에게 매각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매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 C은 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 A, F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A, F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전현정

판사진영현

판사류지미